

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48097(본소), 2019나48103(반소) 판결 [매매대금
수수료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48097(본소), 2019나48103(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단336812(본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배경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9. 9. 27

판결선 고 2019. 11. 22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단336812(본소), 2018가단 312066(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도판사 김세용판사 윤소희